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69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이학영 · 조계원 · 김 윤
한정애 · 임호선 · 정태호
윤호중 · 김주영 · 박민규
황명선 · 강득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해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바, 이같은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과 친수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

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가뭄 위험지역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도시침수 및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9조제2항 중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를 “배수영향구간과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u> <u>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가뭄 위험지역</u> <u>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도시침수 및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u> <u>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u>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 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u>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u>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u>사 및 유지보수) ①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u> <u>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u>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배수영향구간과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u> <u>에</u>----- -----.
---	--